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징 계 · 주의 요 구

제 목 폐수처리업 및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징 계 대 상 자 울산광역시 ○○군 ○○○○과 지방○○○○ ○○○  
(전 울산광역시 ○○○○과 지방○○○○○)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내 용

지방○○○○ ○○○은 2014. 1. 1.부터 2016. 1. 12.까지 울산광역시 ○○○○○과(구 ○○○○과)에서 폐수처리업 및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현 「물환경보전법」 2018.1.18.시행)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3과 같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방지사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2와 같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일반기준 나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비고 6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항1) 또는 9)항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의 기준(해당 위반이 최초

- 
- 1)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2)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부하량 등을 계속 초과하거나 개선명령을 받은 원인이 되는 같은 항목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또는 5회차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사목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비고에 따르면 폐수처리업자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2호가목의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에는 그 기준 중 제2호 사목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62조제2항제4호<sup>3)</sup> 또는 제5호<sup>4)</sup>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울산광역시 ○○○○과(구 ○○○○과<sup>5)</sup>)는 ○○군 ○○읍 ○○○길 00-00 소재 ○○○○(주)에서 2014. 2. 18. 제출한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14.2.17. ~3.31.)를 2014. 2. 20. 수리 통보하였고,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완료보고서 제출 ('14.3.10.)에 따라 2014. 3. 12. 자체 개선완료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2014. 3. 12. ○○○○(주)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과의 지도·점검 시 (방류수 채수) 수질오염물질의 불소 항목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불소 48mg/L(기준 15mg/L)]하여 2014. 4. 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1차' 처분을 하였으나, 방류수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220퍼센트 초과하여

3)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21)

5) 2016. 1. 1. : ○○○○과에서 ○○○○과로 명칭변경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개선명령 2차’로 처분 하지 않고 ‘개선명령 1차’로 처분하였으며,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 1차’ 처분을 하지 않았다.

2014. 6. 17. ○○○○(주)에 대하여 ○○○○○○○○청 환경감시단의 지도·점검 시(방류수 채수) 수질오염물질의 불소 항목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불소 143.11 mg/L(기준 15mg/L)]하여 2014. 7. 2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2차’ 처분을 하였으나, 방류수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854퍼센트 초과 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퍼센트 이상에 해당되어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개선명령 4차’(실제 개선명령 차수는 5차)에 해당하는 ‘조업정지 10일’의 처분(개선명령 4차 이상)을 하지 않고 ‘개선명령 2차’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 2차’ 처분을 하지 않았다.

2014. 10. 20. ○○○○(주)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의 지도·점검 시(방류수 채수) 수질오염물질의 불소 항목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불소 98.27 mg/L(기준 15mg/L)]하여 2014. 11. 24.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3차’ 처분을 하였으나, 방류수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555퍼센트 초과 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퍼센트 이상 6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개선명령 4차’(실제 개선명령 차수는 7차)에 해당하는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지 않고 ‘개선명령 3차’로 행정처분 하였으며,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경고 3차’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0일’의 처분(경고 3차 이상)을 하지 않았다.

2015. 4. 16. ○○○○(주)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과의 지도·점검 시

(방류수 채수) 수질오염물질의 불소 항목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불소 26.11mg/L(기준 15mg/L)]하여 2015. 5. 13.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4차’(실제 개선명령 차수는 8차)에 해당하는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적법하게 하였으나,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3차’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7. 6. 12. ○○○○(주)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과의 지도·점검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처리수조에서 반응/중화조, 응집조, 침전조, 활성탄여과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배출관을 이용하여 방류조로 배출)으로 2017. 5.부터 2017. 6. 12.까지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COD 614.8mg/L(기준 250mg/L), 질소 2,214.96mg/L(기준 60mg/L), 불소 352.8mg/L(기준 15mg/L 등)]한 폐수 5,000여톤을 불법 배출(울산지방검찰청 공소사실)하여 2017. 6. 29.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및 배출부과금 615백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고,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주)의 소유권이 경매로 ○○○○(주)로 이전된 이후 ○○○○(주)은 ‘대기·폐수배출시설 폐쇄 및 폐수처리업 폐업 신고’를 울산광역시 ○○○○과에 하였으며, ○○○○과는 2017. 10. 19. 대기·폐수배출시설 폐쇄 신고를 수리하였고, 2017. 10. 20. 폐수처리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였다.

[표1] ○○○○(주)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

점검일 (행정처분일)	위반내용 (배출농도/기준, mg/L)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폐수처리업		비고
		실제 행정처분	미 행정처분	실제 행정처분	미 행정처분	
'14.3.12. ( '14.4.1.)	배출허용기준 초과 (불소 48/15)	개선명령(1차)	개선명령(1차→2차) (초과율 적용 (200~600%))	-	경고(1차)	
'14.6.17. ( '14.7.21.)	배출허용기준 초과 (불소 143.11/15)	개선명령(2차)	개선명령(2차→5차) (초과율 적용 (600% 이상)) 조업정지(10일)	-	경고(2차)	
'14.10.20. ( '14.11.24.)	배출허용기준 초과 (불소 98.27/15)	개선명령(3차)	개선명령(3차→7차) (초과율 적용 (200~600%)) 조업정지(10일)	-	경고(3차) 영업정지 (10일)	
'15.4.16. ( '15.5.13.)	배출허용기준 초과 (불소 26.11/15)	조업정지(10일) (개선명령 4차)	- (개선명령 8차)	-	경고(3차) 영업정지 (10일)	

※ ○○○○(주)는 ○○국가산업단지 하수처리구역내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BOD·SS 200, COD 250) 지역에 입주(별도의 배출허용기준 고시, 2000.12.12.)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현 「물환경보전법」 2018.1.18.시행)을 준수하지 않고 폐수처리업 및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분한 지방○○○○ ○○○은 실무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징계] 위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폐수처리업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